

1. 절차상 문제

가. 조망(우리아파트)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하지 않았음.

- 현재 당 아파트 107동, 108동에서는 거리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을 바라 볼 수 있는 권리와 1%의 일조방해도 없는 일조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 심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 환경권 침해 규모 파악 절차를 불이행

통상적으로 환경권은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음벽설치로 통풍이 되지 않고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설치물 관련 문제사항

가. 방음판넬이 지면까지 막혀 있어야 방음 효과 있습니다.(사진)

방음벽에 이음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 방음 되지 않음

나. 가설방음 판넬은 방음을 위하여 역곡천 끝부분 까지 연장해 주세요

다. 우리 아파트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정비 및 침사지 미설치로 강우시

토사유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당 아파트 앞 공사 구간에도 적절한 침사지를 설치해 주십시오 기존 침사지는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침사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 보입니다. (사진)

라. 우수관, 하수관 설치 규모가 몇 년빈도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최소 50년빈도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

마. 주 공사차량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산먼지

발행이 우려되오니 세륜세차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여 주세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내용 확인 필요 (사진))

바. 유류통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어 강우시 기름유출이 우려되며,
유류저장시설이 현장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어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음.
(사진)

3. 환경문제

가. 맹꽁이 이주 후 성토를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 없이 성토를 쌓았습니다. 맹꽁이 서식은 거주민들이 수년간 지켜봤습니다.

(야생동물법 위반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에 사항이며, 동법 제 6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됨)
우천시 맹꽁이 소리가 많이 남

현재 고라니 서식지로도 확인됨

서식지 쪽으로 토사물 유출중
의미없는 그물망만 설치되어 있음. (사진)

나. 우리 아파트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정비 및 침사지 미설치로 강우시
토사유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당 아파트 앞 공사 구간에도 적격한
침사지를 설치해 주십시오 기존 침사지는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침사
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 보입니다.

다. 수용전 신양자원 토지를 보면 현재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습니다.
과거 매립폐기물은 반드시 혼합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진)

라. 기존 수용전 사용된 건축물 등의 폐기물 등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토
지 지하수 오염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사진)

4. 요구사항

가. 당 아파트 앞 108, 107동 앞 인도와 같은 높이로 택지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 아파트 앞 인도 보다 높게 택지 조성시 앞선 설명한 재산권 침해(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권 하락)등 당 아파트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므로 절대 수용 불가합니다. 현재 공사된 도로예정지의 기준표를 보면 표층까지 토지 매립 예정으로 보이며 그 높이가 당 아파트 1.5층~2층 높이로 추정되는 실정입니다.

2014년 4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에서 고시된 SH공사가 제출한 서울 항공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신청 중 52, 60폐이지를 보면 당 아파트 앞에 조성될 예정인 중학교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우려에 관한 심의위원의 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고층아파트 때문에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니 최대한 건물을 뒤쪽(당아파트로부터 28M 거리)하고 운동장을 남쪽에 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중학교와 이격거리과 얼마 안 떨어진 당 아파트 조망권 및 일조권의 침해는 짐작해 보건대 거주민의 삶의 터전인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보다 훨씬 더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당 아파트 앞 택지를 2M 높이로 높게 조성한다는 것은 당 아파트의 거주민의 기본 환경권인 조망권과 일조권을 아예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거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조망권 및 일조권) 보장을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요구 합니다. 당 아파트 앞 인도높이 보다 높은 택지조성 절대 수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권 등의 피해 이외의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과거 농경지 레벨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항동 보금자리 주택의 레벨이 올라가게 될 경우 지하주차장 누수 및 침수가 우려됨
- SH설계대로 항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레벨이 올라갈 경우 당 아파트가 우수유역권의 하류가 될것으로 염려되며, 재해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의문임.
또한, 우수관 설치 규모가 몇 년 빈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강우시에 당 아파트는 침수될 염려가 있음. (사진)

나.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당 아파트 가림막에서 폭 40m 완충녹지 조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당 아파트 경관 시뮬레이션을 요구합니다.
(사진)

다. 완충녹지와 연결녹지의 차이점 무엇인지 왜 연결녹지인지.. 우리는 완충녹지 등 자연상태의 녹지를 원합니다.

라. 공사안하는 구간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오니 그린망 등 비산먼지 분진 억제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로 인한 소음(앞으로 발생할 건축소음...)을 측정하여 피해 수준 이상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일요일, 공휴일 공사 중지와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공사 소음이라면 그 방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바. 호우시 토사유출 위험에서 안전 확인 및 증명 요구

사. 107동 앞 토지용도 확인 (학교부지 예정지)해 주세요

차. 13-1번지 옛 목양교회자리는 현재 교통 사고다발 구간이고 보금자리주택조성으로 증가한 인구에 비해 너무나 좁은 도로폭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도로나 녹지로 용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5. 요구서류

가. 토지계획이용

나. 조경계획도

다. 수목식재계획도 (평면도, 단면도)CAD

라. 재해영향평가

마. 통수능검토(우수, 하수)

바. 횡단면도.

사. 조망(우리아파트) 경관 시뮬레이션

6. 회신요구일자

2016년 7월 8일 금요일